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68호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고시 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하고,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하며 검사항목 중 혈압, 혈당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

#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

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 
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 
교통부장관(물류산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반대 시 이유 명시)

| 개정안 | 수정안 | 의견 |
|-----|-----|----|
|     |     |    |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
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
- 전자우편 : fiend70@korea.kr
- 팩 스 : 044-201-5601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 
『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 
물류산업과(전화 044-201-402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